



소득세법 시행령 [시행 2024.07.01.] [제34265호, 2024.02.29.] 일부개정

제 149조의3 【소액 부징수의 예외】

법 제86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"이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·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.

<제34265호, 2024.02.29.>

제 1조(시행일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149조의3 및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: 2024년 7월 1일
2. 제159조의4 전단, 별표 3의2 제10호·제12호 및 별표 3의3 제2호·제5호의 개정규정: 2025년 1월 1일
3. 별표 2의 개정규정: 2024년 3월 1일

